

주주각위

## 제6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

주주님의 건승과 덕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우리회사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6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※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### ■ 아 래 ■

1.일 시 : 2026년 3월 26일 (목) 오전 10시

2.장 소 : 경남 양산시 총령로 355 넥센타이어주식회사 본사 강당

### 3.회의목적사항

<보고안건> 감사보고, 영업보고,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

<부의안건>

제1호 의안 : 제68기(2025년 1월 1일 ~ 2025년 12월31일)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
제2호 의안 : 이익잉여금 처분(안) 승인의 건

제3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(※세부내용은 붙임 참조)

제4호 의안 :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

- 제4-1호 의안 :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정수미 선임의 건

성명	생년월일	주요약력	추천인	최대주주와의관계	감사위원 분리선출 여부	비고
정수미	1981년02월18일	現, 한국회계학회 상임이사 現,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	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	없음	분리선출	재선임 (재무전문가)

- 제4-2호 의안 :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재홍 선임의 건

성명	생년월일	주요약력	추천인	최대주주와의관계	감사위원 분리선출 여부	비고
김재홍	1969년03월26일	現, CJ제일제당 자문 前, CJ제일제당 전략추진실 부사장	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	없음	분리선출	신규선임

제5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제6호 의안 : 임원 퇴직금 규정 일부 변경의 건 (※세부내용은 붙임 참조)

### 4.전자투표에 관한 사항

당사는 주주님들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를 이번 주주총회에 활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주주총회 당일 직접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들께서는 전자투표를 이용하시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전자투표시스템

- 인터넷 주소 : <https://evote.ksd.or.kr>

- 모바일 주소 : <https://evote.ksd.or.kr/m>

※ 해당 전자투표시스템의 관리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

나. 전자투표 행사기간 : 2026년 3월 16일 09시 ~ 2026년 3월 25일 17시

- 첫날(오전 9시 부터 행사) 및 마지막날(오후 5시 까지 행사)을 제외한 투표기간 중 24시간  
의결권 행사 가능

다.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

-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: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 
(K-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)

라. 수정동의안 처리 :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

## 5. 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회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 
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3월 10일

 **넥센타이어주식회사** 

대 표 이 사 김 현 석 (직인생략)

현 행 (변경 전)	개 정 (변경 후)	변경 목적
<p><b>제 21 조 (소집지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② (신설)</p>	<p><b>제 21 조 (소집지와 개최방식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(현행과 동일)                      ② <u>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제 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한다.</u></p>	<p>전자주총 도입 관련                      개정 상법 선제 반영                      ('27년 1월 시행예정)</p>
<p><b>제 27 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<u>서면(위임장)</u>을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 27 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(현행과 동일)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전자주총 도입 관련                      개정 상법 선제 반영                      ('27년 1월 시행예정)</p>
<p><b>제 30 조 (이사의 수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이 회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, <u>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한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 ② 이사는 그 일부를 <u>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</u>에서 추천한 비상근 <u>사외이사</u>로 할 수 있다.</p>	<p><b>제 30 조 (이사의 수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이 회사의 <u>이사는</u>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, <u>독립이사는</u> 3명 이상으로 하되,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② 이사는 그 일부를 <u>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</u>에서 추천한 비상근 <u>독립이사</u>로 할 수 있다.</p>	<p>독립이사 명칭변경 관련                      개정 상법 선제 반영                      ('26년 7월 시행예정)</p>
<p><b>제 31 조 (이사의 선임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~②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③ <u>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	<p><b>제 31 조 (이사의 선임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~② (현행과 동일)                      ③ (삭제)</p>	<p>집중투표제 의무화                      관련 상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선제 반영                      ('26년 9월 시행예정)</p>
<p><b>제 31 조의2 (사외이사 후보의 추천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<u>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</u>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<u>사외이사</u> 후보를 추천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② <u>사외이사</u>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<u>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</u>에서 정한다.</p>	<p><b>제 31 조의2 (독립이사 후보의 추천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<u>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</u>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<u>독립이사</u> 후보를 추천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② <u>독립이사</u>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<u>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</u>에서 정한다.</p>	<p>독립이사 명칭변경 관련                      개정 상법 선제 반영                      ('26년 7월 시행예정)</p>
<p><b>제 32 조 (이사의 임기)</b>  <u>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</u></p>	<p><b>제 32 조 (이사의 임기)</b>  <u>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.</u></p>	<p>이사 임기만료                      정기주주총회일로 명확화</p>
<p><b>제 33 조 (이사의 보선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~②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③ <u>사외이사가 사임,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b>제 33 조 (이사의 보선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~② (현행과 동일)                      ③ <u>독립이사가 사임,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독립이사 명칭변경 관련                      개정 상법 선제 반영                      ('26년 7월 시행예정)</p>

현 행 (변경 전)	개 정 (변경 후)	변경 목적
<p><b>제 35 조의2 (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)</b></p> <p>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(중략) 최근 1년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배(사외이사의 경우는 4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 35 조의2 (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)</b></p> <p>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(중략) 최근 1년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배(독립이사의 경우는 4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동일)</p>	<p>독립이사 명칭변경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’26년 7월 시행예정)</p>
<p><b>제 40 조의2 (위원회)</b></p> <p>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.</p> <p>1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</p> <p>2~3. (생략)</p> <p>②~③ (생략)</p>	<p><b>제 40 조의2 (위원회)</b></p> <p>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.</p> <p>1.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</p> <p>2~3.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~③ (현행과 동일)</p>	<p>독립이사 명칭변경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’26년 7월 시행예정)</p>
<p><b>제 43 조 (감사위원회의 구성)</b>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,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 본 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.</p> <p>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 <p>⑥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 <p>⑦ (생략)</p> <p>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</p>	<p><b>제 43 조 (감사위원회의 구성)</b></p> <p>①~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하고, 독립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 본 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.</p> <p>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 <p>⑥ (삭제)</p> <p>⑦ (현행과 동일)</p> <p>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.</p>	<p>독립이사 명칭변경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’26년 7월 시행예정)</p> <p>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’26년 9월 시행예정)</p> <p>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’26년 7월 시행예정)</p>

현 행 (변경 전)	개 정 (변경 후)	변경 목적
<p><b>제 47 조 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)</b></p> <p>①~③ (생략)</p> <p>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.</p> <p>1.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</p> <p>2.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</p> <p>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⑥ (생략)</p> <p>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 47 조 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)</b></p> <p>①~③ (현행과 동일)</p> <p>④ (삭제)</p> <p>⑤ (삭제)</p> <p>⑥ (현행과 동일)</p> <p>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ESG(지배구조) 개선 목적 : 재무제표는 주주총회에서만 승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주권 강화</p>
<p><b>(신설)</b></p>	<p><b>부칙 (2026.3.26)</b></p> <p>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(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6년 3월 26일)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 (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 행사) 제21조 및 제27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3조 (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) 제30조, 제31조의2, 제33조, 제35조의2, 제40조의2, 제43조(제4항 및 제5항은 제외)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4조(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) 제31조 개정 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</p> <p>제5조(감사위원회 선·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제43조 제5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 부터 시행한다.</p>	<p>상법 시행시기 따른 경과규정 마련</p>

붙임 : 제 7 호 의 안 : 임원 퇴직금 규정 일부 변경의 건

현 행 (변경 전)	개 정 (변경 후)	변경 목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4. 퇴직금의 산출</b></p> <p>4.3. 임원이 중임되었을 경우 재임 기간은 이를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직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각 직책 재임 기간별로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.</p>	<p><b>4. 퇴직금의 산출</b></p> <p>4.3. 임원이 중임되었을 경우 재임 기간은 이를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<b>직위가</b>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각 <b>직위</b> 재임 기간별로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.</p>	<p>직위 기준 명칭 변경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7. 경과초지</b></p> <p>현 임원이 2018년 12월 10일 이후 계속 연임될 경우 각 재임 기간별 정률을 승함에 있어서는 2018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그 전은 구 규정("표#2")에 따라 계산하고, 그 이후는 본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.</p>	<p><b>7. 경과초지</b></p> <p>현 임원이 2018년 12월 10일 이후 계속 연임될 경우 각 재임 기간별 정률을 승함에 있어서는 2018년 12월 10일 <b>이전</b>은 ("표#3")에 따라 <b>계산하고, 2018년 12월 1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</b> 기간은 ("표#2")에 따라 계산하며, 그 이후는 ("표#1")에 따라 계산한다.</p>	<p>기간별 정률 산정 기준 변경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(표#1) 임원퇴직금 정률표</b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8 824 662 1048"> <thead> <tr> <th>직 위</th> <th>정 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회 장</td> <td>4</td> </tr> <tr> <td>부 회 장</td> <td>3.5</td> </tr> <tr> <td>Global CEO, 사장</td> <td>3</td> </tr> <tr> <td>Business Group長</td> <td>2.5</td> </tr> <tr> <td>Business Sector長</td> <td>2</td> </tr> <tr> <td>기타 상근임원</td> <td>1.5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직 위	정 률	회 장	4	부 회 장	3.5	Global CEO, 사장	3	Business Group長	2.5	Business Sector長	2	기타 상근임원	1.5	<p><b>(표#1) 임원퇴직금 정률표(25.12.01. 이후 계산시)</b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699 824 1252 1025"> <thead> <tr> <th>직 위</th> <th>정 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회 장</td> <td>4</td> </tr> <tr> <td>부 회 장</td> <td>3.5</td> </tr> <tr> <td>사장</td> <td>3</td> </tr> <tr> <td><b>부사장</b></td> <td><b>2.5</b></td> </tr> <tr> <td><b>상무</b></td> <td><b>2</b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직 위	정 률	회 장	4	부 회 장	3.5	사장	3	<b>부사장</b>	<b>2.5</b>	<b>상무</b>	<b>2</b>	<p>직위 기준 명칭 변경</p>				
직 위	정 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회 장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 회 장	3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Global CEO, 사장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Business Group長	2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Business Sector長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 상근임원	1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직 위	정 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회 장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 회 장	3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장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부사장</b>	<b>2.5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상무</b>	<b>2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(표#2) 임원퇴직금 정률표(18.12.10. 이전 계산시)</b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8 1153 662 1406"> <thead> <tr> <th>직 위</th> <th>정 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회 장</td> <td>4</td> </tr> <tr> <td>사 장</td> <td>3</td> </tr> <tr> <td>부 사 장</td> <td>2.5</td> </tr> <tr> <td>전 무 이 사</td> <td>2.5</td> </tr> <tr> <td>상 무 이 사</td> <td>2</td> </tr> <tr> <td>이 사</td> <td>1.5</td> </tr> <tr> <td>감 사</td> <td>1.5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직 위	정 률	회 장	4	사 장	3	부 사 장	2.5	전 무 이 사	2.5	상 무 이 사	2	이 사	1.5	감 사	1.5	<p><b>(표#2) 임원퇴직금 정률표(18.12.11. 이후~25.11.30. 이전 계산시)</b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699 1153 1252 1384"> <thead> <tr> <th>직 위</th> <th>정 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회 장</td> <td>4</td> </tr> <tr> <td>부 회 장</td> <td>3.5</td> </tr> <tr> <td>Global CEO, 사장</td> <td>3</td> </tr> <tr> <td>Business Group長</td> <td>2.5</td> </tr> <tr> <td>Business Sector長</td> <td>2</td> </tr> <tr> <td>기타 상근임원</td> <td>1.5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직 위	정 률	회 장	4	부 회 장	3.5	Global CEO, 사장	3	Business Group長	2.5	Business Sector長	2	기타 상근임원	1.5	<p>(표#1) 수정에 따른 순서 변경</p> <p>구(표#1)→(표#2) 구(표#2)→(표#3)</p>
직 위	정 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회 장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 장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 사 장	2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 무 이 사	2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상 무 이 사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이 사	1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감 사	1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직 위	정 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회 장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 회 장	3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Global CEO, 사장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Business Group長	2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Business Sector長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 상근임원	1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(신설)</b></p>	<p><b>(표#3) 임원퇴직금 정률표(18.12.10. 이전 계산시)</b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699 1458 1252 1720"> <thead> <tr> <th>직 위</th> <th>정 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회 장</td> <td>4</td> </tr> <tr> <td>사 장</td> <td>3</td> </tr> <tr> <td>부 사 장</td> <td>2.5</td> </tr> <tr> <td>전 무 이 사</td> <td>2.5</td> </tr> <tr> <td>상 무 이 사</td> <td>2</td> </tr> <tr> <td>이 사</td> <td>1.5</td> </tr> <tr> <td>감 사</td> <td>1.5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직 위	정 률	회 장	4	사 장	3	부 사 장	2.5	전 무 이 사	2.5	상 무 이 사	2	이 사	1.5	감 사	1.5	<p>(표#1) 수정에 따른 순서 변경</p> <p>구(표#1)→(표#2) 구(표#2)→(표#3)</p>														
직 위	정 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회 장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 장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 사 장	2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 무 이 사	2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상 무 이 사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이 사	1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감 사	1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

제 68 기    2025년 01월 01일 부터    2025년 12월 31일 까지  
(처분확정일    2026년 3월 26일)

제 67 기    2024년 01월 01일 부터    2024년 12월 31일 까지  
(처분확정일    2025년 3월 26일)

**NGV** **빅센타이어주식회사**

(단위 : 원)

과 목	제 68 기		제 67 기	
I. 처 분 전 이 익 잉 여 금		141,414,310,967		134,971,447,140
1. 전 기 이 월 이 익 잉 여 금	92,701,760		60,059,128	
2. 회 계 정 책 변 경 효 과				
3. 기 타 포 괄 손 익 전 입 액				
4. 보 험 수 리 적 이 익	3,211,035,239		(14,478,637,892)	
5. 당 기 순 손 익	138,110,573,968		149,390,025,904	
II. 임 의 적 립 금 등 의 이 입 액		-		-
1. 임 의 적 립 금				
III. 이 익 잉 여 금 처 분 액		141,330,065,200		134,878,745,380
1. 이 익 준 비 금	2,100,000,000		1,400,000,000	
2. 임 의 적 립 금	118,500,000,000		120,100,000,000	
3. 연 구 · 인 력 개 발 준 비 금				
4. 배 당 금	20,730,065,200		13,378,745,380	
가. 현 금 배 당	20,730,065,200		13,378,745,380	
[주당배당금(율)]				
보통주 : 당기 200원(40%)	19,397,565,200		12,501,245,380	
전기 130원(26%)				
우선주 : 당기 205원(41%)	1,332,500,000		877,500,000	
전기 135원(27%)				
IV. 차 기 이 월 이 익 잉 여 금		84,245,767		92,701,760